

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년 3월 31일(목요일) 오전 09시 00분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(삼성동, 무역센터 코엑스) Conference Room(남) 301호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

- (1) 감사보고
- (2) 영업보고
- (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 1호 의안 : 제19기(2021.01.01~2021.12.31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

제 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별첨1 정관변경 신규대비표 참조)

제 3호 의안: 사내이사 선임의 건

[사내이사 선임 세부내역]

성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(현직포함)
김철웅	1967-02	2년	재선임	경희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시드니 대학원 마케팅 석사 前 신한은행 근무 前 팩스넷 자회사 핑거마케팅 이사 前 포이시스 마케팅 이사 現 에코마케팅 대표이사

제 4호 의안: 상근감사 선임의 건

[감사선임 세부내역]

성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(현직포함)
이제경	1963-04	3년	신규선임	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前 라이나생명보험 전무이사 現 100세경영연구원 원장

제 5호 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
제 6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(5억)

제 7호 의안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(1억)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화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368조의 4)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)를 도입하였습니다.

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도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「<https://vote.samsungpop.com>」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: 2022년 3월 21일 오전 9시~ 2022년 3월 30일 오후 5시

-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(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)

7. 주총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주본인 신분증

- 대리행사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

8. 기타사항

비용절감을 위하여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16일

주식회사 에코마케팅
대표이사 김철웅 (직인생략)

I. 신. 구조문대비표

기 존	개 정	개 정 이 유
<p>제40조(감사의 선임) 1.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</p> <p>2.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3.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	<p>제40조(감사의 선임) 1.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</p> <p>2.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3.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상법 제 368 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u>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	<p>-감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</p>